

이 근 창
 본협회 국제 위원장
 by Lee Keun-Chang

제4차 “APEC ARCHITECT PROJECT” 추진회의

Report on the 4th "APEC Architect
Project" Conference

제4차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겸 제1차 임시이사회(Provisional Council) 회의가 2004년 9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하와이 Regency Hyatt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APEC 21개 회원국 중 오스트레일리아(4인), 캐나다(2인), 중국(1인), 홍콩(4인), 일본(10인), 한국(3인), 말레이시아(5인), 멕시코(1인), 뉴질랜드(2인), 페루(1인), 필리핀(4인), 싱가포르(1인), 태국(5인), 미국(8인), 대만(7인), 총15개국에서 58명이 참석하였고, 회의가 추진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로 승격하면서 자국 내에 APEC 건축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사를 추대하지 못한 한국, 캐나다, 중국, 페루는 참관국이 되어 임시 이사회의 실질적인 참가국은 11개국인 셈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담당 이관영이사, 이영수 국제부위원장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설립기본정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회의도 이를 근간으로 진행되었다.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이후 8개국(칠레, 홍콩, 멕시코, 파파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특히 APEC은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위하여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무역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GATS)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APEC Architect Project'는 APEC산하 기구인 인력개발 Working Group(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HRDWG에서는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발족시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각 회원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격 소지자에 대해 상호 인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의 입장과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각국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3차례의 추진 위원회 회의(1차 : 오스트레일리아, 2차 : 말레이시아, 3차 : 타이페이)를 갖은 바 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안건별 내용은 참가국 간의 차기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통과 되었다.

교육표준에 관한 성명(the Educational Benchmark statement)

"건축사 교육은 적어도 4년 동안의 전일제 학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은 대학교 수준에서 건축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사 교육은 건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측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APEC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승인된 회원국의 감독당국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전업 건축학업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광범위한 경험적 교육도 APEC건축사 교육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APEC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

- 1) APEC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절차를 각국이 관리하는 APEC건축사 심사에 적합하도록 한다. 단 자체 내 운영 매뉴얼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사 성명과 사업체 주소, 건축사 등록/면허를 부여한 자국 혹은 관할 국가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에 매 2년마다 회비를 납부하면 갱신된다. 또한 체류 국에서 건축사 활동 신청을 할 경우 등록 세부사항을 갱신/재검토 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현재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국의 평가기준에 맞춰 갱신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 간 건축사 활동을 하지 않은 건축사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건축사가 영구 거주지가 있는 국가나, 건축사로서 일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 등록/면허가 취소될 경우 APEC건축사 등록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또한 자국 혹은 체류국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위반한 것으로(절차에 의거) 판명될 시 APEC건축사 등록은 자국의 심사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APEC 건축가가 갖게 될 권리는 각국의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APEC건축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에서 등록된 APEC건축사는 중앙 협의회(Central Council)의 제약조건에 의거하여 동일 목적으로 사무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장 2년 동안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회의 부가적 역할로는

타 국가 출신 APEC건축사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들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가/등록 제도와 일차적 인증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등록/면허 요건의 중대한 변경, 평의회와 정책과 배치되는 자국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중앙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APEC건축사 중앙 이사회는

- 1) 적어도 2년 마다 소집하고 참가국은 번갈아서 개최한다.
- 2) 회의 시 의장은 일반적인 경우 회의의 주최국의 감사위원회가 임명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의장은 최장 연속 2회의 회의에서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 대표가 3회 연속으로 회담에 불참할 시, 해당 감사 위원회는 APEC건축사 프레임워크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참가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승인의 효력 회복을 재신청 해야 할 수도 있다.
- 4) 의제는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을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후 중앙이사회 구성원에게 재 배포하여 중앙이사회 개시 시 합의를 거쳐 채택한다.
- 5) 중앙이사회 정족수는 중앙이사회 정수의 3분의 2로 한다. 또한 APEC건축사 기준과 등록 정책의 변경, 감사위원회의 인증과 조건부 활동정지와 관련된 모든 중앙이사회의 결정은 중앙이사회 정수의 3분의 2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은 출석한 구성원의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6) 심사위원회는 표결을 위해서는 회의 소집 전에 대표를 선임하여 의제와 함께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새로이 구성되어 중앙이사회에 APEC건축사 등록

새로이 구성되어 중앙이사회에 APEC건

축사 등록의 관리승인을 신청하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부속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국가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책임이 있는 당국과 전문성 인정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이름과 세부 연락처
- 2) 전문성 인정의 형식-규정상의 혹은 법상의 요건, 관련 협회에 의한 수여, 건축업계의 관행에 의한 인정, 혹은 건축사 자격의 형식
- 3)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구성원이 대표하는 기관의 이름과 역할, 심사위원회의 세부 연락처

APEC건축사 기준으로는

- 1) 과정의 기간과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사의 전문성 인정에 필요한 교육 기준에 부합한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건축교육의 프로그램, 경험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동등한 역량을 인정하는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2) 어떤 관할기관이 기준을 정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누구에 의해 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기관이 프로그램 인가/인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인가하고 인정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
- 3) 요구되는 경험의 기간과 범위, 그리고 평가 방법과 주체를 포함하여 건축사로서의 활동 허용을 위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등록 전 직업적 경험의 기간
- 4) 개인 면접, 구두 혹은 서면 시험 등 추가적인 등록/면허 요건
- 5) 역량의 지속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등록 혹은 면허를 교부받은 건축사나 APEC건축사에게 감독당

국/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직업적 행동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요건

각국에 등록된/면허를 교부 받은 건축사로서의 전문적 경험의 지속기간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자는 등록/면허교부 이후 완료된 7년 간의 전문적 경험을 입증하는 공인된 기록을 (사무국의) 표준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개업/혹은 고용업체명 및 날짜와 업무를 수행한 자격(단독 개업 건축사, 합동 사무소나 회사의 책임 건축사, 종업원)
- 3) APEC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범주에 대해 전후 참조(cross-reference) 표시와 더불어 7년 동안 각 단계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
- 4) 수행한 프로젝트와 요구 사항인 복잡한 혹은 어느 정도 복잡한 건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축사로서 3년의 경력기간 동안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 5) APEC건축사 등록 후보자는 등록된/면허를 교부 받은 건축사로서의 전문적 경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감시위원회나 그 대표자가 행하는 개인면접에 참석해야 한다.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해서는

- 1) 각 국가는 제2차 임시위원회 소집 전에 자체적으로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2) 어떤 옵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개별 웹사이트에 대해서 감시 위원회는 통일된 포맷을 따른다.
- 3) 각 국가의 레지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링크 되어 있고 APEC건축사 프레임워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이사회와 중앙 도메인을 구축하고 임

시위원회는 도메인 명에 대해 합의한다.

4) APEC건축사 레지스터의 각 부분에 대한 활자 기록은 감시위원회에 의해 매년 발간된다. 또한 APEC건축사 웹사이트들은 APEC건축사 프레임 워크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APEC건축사의 리스트, 관련 간행물과 문서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기준은

- 통일성 • 프라이버시
- 접근가능성 • 사용의 용이성
- 비용효율 • 관리의 용이성
-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기로 하였다.

■ 시행스케줄로는

- 2005년 1월까지 웹사이트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배포하고
- 심사위원회는 2005년 3월 1일까지 사무국에 의견을 개진 한 후 제2차 임시위원회에서 웹사이트 공개하기로 하였다.

향후 고려사항으로는

- 각 참여국가는
- 1)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이점을 건축업계와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 홍보한다.
 - 2) 관련 정부 당국에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APEC건축사의 독립적인 업무에 대한 기타 제한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 3) APEC건축사 등록의 출범을 알리고 건축사들이 그 이점을 향유하도록 고무한다.
 - 4) 자국의 행동규범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APEC건축사의 이점을 공공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 수단으로 홍보한다.
 - 5) 자국 정부로부터 APEC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입수하여 이를 모든 심사위원회에 배포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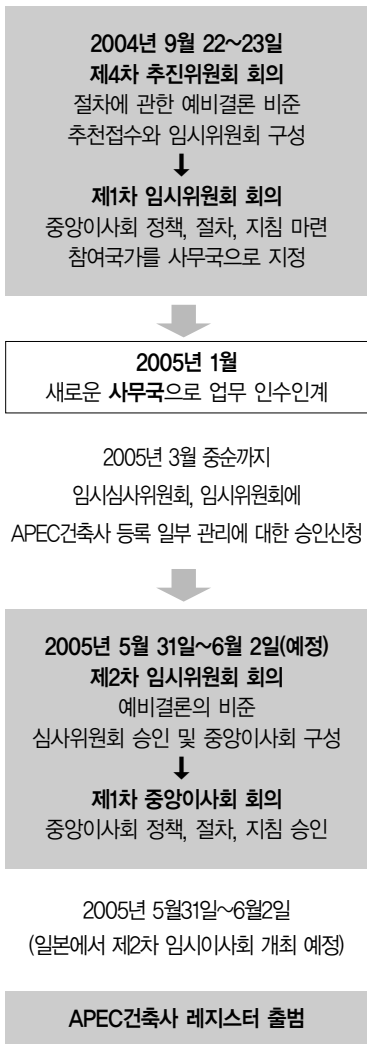
6) APEC건축사 등록자에게 타 APEC건축사들이 제안하는 직업동맹을 고려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향후 고려사항 미래의 목표

정책상의 문제로서, 미래의 적절한 상황에서 다른 APEC회원국들과 공식적인 양국간 혹은 다자간 건축사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기 회의

차기 회의(제2차 임시이사회)는 일본 도쿄에서 2005년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후 예상되는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Timetable은 아래와 같다.



국내 건축계에서는 비정부가구인 UIA산하 PPC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Guide Line에 따라 교육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여 다자간 건축사의 상호인정의 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 자격의 근간이 되는 건축학 교육을 5년 전일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이들의 프로그램과 자원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건축학 인증원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UIA에서는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축조되는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 건축주의 이익, 전문가의 이익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와 인류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각 해당국간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해 기본개념을 정립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본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경제협력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최대한 인정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아니 보다 근접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참여국 대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기관 산하의, 건축 교육, 건축사 자격, 시험, 등록, 지속교육, 재등록 등을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건축사 등록원)와 전문가 단체 대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석하여 현실적인 입장(제도, 절차,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분모를 찾아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협의 내용 자체에도 각국의 현 제도를 규제 또는 강화 보다는 수용,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그들은 논의 되고 있는 APEC 건축사의 기준을 심사 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에 수월하게 협상에 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 홍콩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 제도와 기준이 UIA 기준 보다 하향 조정되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육 이수 연한을 4년으로 수용한데는 통합교육(Holistic Education)을 주장하는 일본의 제도를 반영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년 4차 추진위원회 겸 제1차 임시이사회 이후 차기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2차 임시이사회 겸 제1차 중앙이사회에서 각 국의 심사위원회로부터 APEC건축사 등록을 한 건축사의 APEC건축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체화 되고 있는 APEC건축사의 등록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건축사 등록원의 발족이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APEC건축사 자격이 확보되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WTO Channel을 통한 양국 또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건축사들이 UIA 기준보다는 하향 조정 되고 있는 APEC건축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회원국간 이미 구축된 경제협력체제를 이용한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한 첫 단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